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58회 2023. 6. 1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9호 도시관리계획(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고시 — 1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84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1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9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연희공원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032-458-7042)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032-560-5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3. 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변경)
 - 연희파크 주식회사(대표 김정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1810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주)호반건설(대표 박철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 파크 2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변경)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외 70필지
- 나. 대지면적 : 65,845㎡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43,095.9162㎡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903,665,049천원

4. 사업기간 : 2023. 6. 30. ~ 2026. 11. 29.(변경)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변경)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6. 도시관리계획(연희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광로 | 2 | 4 | 50~53 | 주간선 도로 | 16,180 (178) | 광로 3-2 | 금곡동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70.2.9 | |
| 변경 | 광로 | 2 | 4 | 50~53 | 주간선 도로 | 16,180 (178) | 광로 3-2 | 금곡동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70.2.9 | ·()는 사업 구역 내 · 연희공원 중복결정 (면적488㎡)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광로2-4 | 광로2-4 | - 면적: 489㎡ → 488㎡ (감 1㎡)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공 원 | 소공원 | 연희동 428-108번지 일원 | 1,382 | 감 7 | 1,375 | - | |
| 변경 | 2 | 공 원 | 어린이 공원 | 연희동 428-90번지 일원 | 3,618 | 감 32 | 3,586 |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 | 1 | 공 원 | - 면적: 1,382㎡ → 1,375㎡ (감 7㎡)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변경 | 2 | 공 원 | - 면적: 3,618㎡ → 3,586㎡ (감 32㎡)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 | 필지 |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 위치 | 면적(㎡) | | |
| | | | |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
| - | A | 71,464 | 71,464 | 1 | 65,801 | 65,845 | - | - | - | 공동주택 |
| | | | | 2 | 1,382 | 1,375 | - | - | - | 소공원 |
| | | | | 3 | 3,618 | 3,586 | - | - | - | 어린이공원 |
| | | | | - | - | - | - | 489 | 488 | 중봉대로 가감속 |
| | | | | - | - | - | - | 174 | 170 | 경서3 구역외도로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번호 | 위치 | |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필지 번호 | | |
| - | A | 1 | - | - 면적: 65,801㎡ → 65,845㎡ (증 44㎡)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 2 | - | - 면적: 1,382㎡ → 1,375㎡ (감 7㎡)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 3 | - | - 면적: 3,618㎡ → 3,586㎡ (감 32㎡)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 - | - | - 면적: 489㎡ → 488㎡ (감 1㎡)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 | - | - | - 면적: 174㎡ → 170㎡ (감 4㎡)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7.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99호

도시관리계획(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석남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1 | 석남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55,733.0 | 감) 96 | 55,637.0 | 2017. 11.2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변경내용 |
|----|----------------|--------------------|-----------------------------|----------|------------------------------------|
| 변경 | 1 | 석남 지구단위 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55,637.0 | ○ 등록전환 및 지적 분할 측량 결 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소 계 | | 55,733.0 | 감) 96 | 55,637.0 | 100.0 | |
| 공업지역 | 준 공업지역 | 55,733.0 | 감) 96 | 55,637.0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
| | | 기정 | 변경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준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55,637.0 | 400% | ○ 등록전환 및 지적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 유별 | | 합 계 | | | 1 류 | | | 2 류 | | | 3 류 | | |
|----|----|------------|------------|-----------|------------|------------|------------|------------|------------|------------|------------|------------|-----------|
| | | 노선수 (개) | 연 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 장 (m) | 면 적 (㎡) | 노선수 (개) | 연 장 (m) | 면 적 (㎡) | 노선수 (개) | 연 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2 | 387 | 1,409 | 1 | 217 | 603 | - | - | - | 1 | 170 | 806 |
| | 변경 | 2 | 387 | 1,444 | 1 | 217 | 589 | - | - | - | 1 | 170 | 855 |
| 광로 | 기정 | 1 | 170 | 806 | - | - | - | - | - | - | 1 | 170 | 806 |
| | 변경 | 1 | 170 | 855 | - | - | - | - | - | - | 1 | 170 | 855 |
| 대로 | 기정 | 1 | 217 | 603 | 1 | 217 | 603 | - | - | - | - | - | - |
| | 변경 | 1 | 217 | 589 | 1 | 217 | 589 | -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광로 | 3 | 9 | 40 (40-52) | 주간선 도로 | 16,260 (170) | 송림동 대1-18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76. 07.08 | |
| 변경 | 광로 | 3 | 9 | 40 (40-52) | 주간선 도로 | 16,260 (170) | 송림동 대1-18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76. 07.08 | 면적변경 |
| 기정 | 대로 | 1 | 11 | 35 (35-38) | 주간선 도로 | 7,200 (217) | 석남동 광3-9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75. 05.16 | |
| 변경 | 대로 | 1 | 11 | 35 (35-38) | 주간선 도로 | 7,200 (217) | 석남동 광3-9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75. 05.16 | 면적변경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광로 3-9 | 광로 3-9 | ○ 면적변경 - 806㎡ → 855㎡ 증) 49㎡ | ○ 등록전환 및 지적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 대로 1-11 | 대로 1-11 | ○ 면적변경 - 603㎡ → 589㎡ 감) 14㎡ | ○ 등록전환 및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기정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 필지면적 (㎡)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 | | |
| 합 계 | | 54,324 | - | - | 54,324 | |
| A | A1 | 54,324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 | 54,324 | |

■ 변경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 필지면적 (㎡)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 | | |
| 합 계 | | 54,193 | - | - | 54,193 | |
| A | A1 | 54,193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 | 54,193 | |

■ 변경사유서

| 도면 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A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 면적변경 - 54,324㎡→54,193㎡ 감)131 | ○ 등록전환 및 지적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A | A1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건축물 또는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제외) 단,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 폐 율 | ○ 70% 이하 |
| | | 용 적 률 | ○ 400% 이하 |
| | | 높 이 | ○ 80m 이하(8층 이하) |
| | | 건축한계선 | ○ 광로, 대로 경계에서 6m 이상 후퇴하여 지정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전구역 | 대지의 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적용 ○ 수종은 인천시 향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되 계절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식재를 하고, 수경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
| - | 전구역 | 옥상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 조성시 인정면적은 옥상녹화 조성면적 가운데 계단담,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 ○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옥상녹화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 |
| - | 전구역 | 외벽(입면)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처리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이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수준으로 처리하여 모든 외벽의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조화 유지 ○ 대형건축물 입면(특히, 건축물 동측 신석체육공원변)은 시각적 분절(색상 조정, 재질감 변화 등) 등의 방법으로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 ○ 재질은 변질되지 않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환경적으로 위해하지 아닌 재질사용 |
| - | 전구역 | 옥외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는 건축물의 윤곽선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광고물 크기 규제 하고 위치는 건축물의 전면을 가리지 않아야 함 ○ 건축물의 지번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 |
| - | 전구역 | 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주변환경과 조화 및 품격있는 색조의 사용을 권장 ○ 기타시설(차폐시설, 안내탑 등)은 시설물에 원색은 자제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저채도 적용 ○ 주변 공원, 녹지등 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계열의 색채사용 |
| - | 전구역 | 건축물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 기능에 적합한 심플한 형태를 위주로 하며, 외벽재질 색상변화 등으로 가로경관을 고려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27 외 11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 로 명 부 여 사유 |
|------|-------|-------------------|----------------|-----------------|
| | | 별 도 열 략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6.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6-19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7-5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27 (오류동) | 20121025 | 뱃길로에서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89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8번길 3 (불로동) | 20081231 | 검단로76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불로 문화체육센터 |
| 3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0-4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56번길 8 (마전동) | 20081231 | 원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6-19

|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42번길 23 (석남동)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2218(23.1.18)) | 20090922 |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86번길 37 (가좌동)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7318(23.2.27.)) | 20090922 |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공장 |
| 3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295번길 14-1 (석남동)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14341(23.4.10.)) | 20090922 | 염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98 (왕길동) | 건물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원척로47번길 38 (가좌동)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12103(23.3.28)) | 20090706 | 원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6 | 인천광역시 서구 원척로47번길 42 (가좌동)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12101(23.3.28)) | 20090706 | 원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7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76번길 17-1 (원창동)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11587(23.3.24.)) | 20090706 |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8 | 인천광역시 서구 목향로207번길 60 (원창동) | 원창동 393-53, 393-54 건물번호 부여신청(신축)에 따라 기존건물 폐지 | 20131202 | 목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9 | 인천광역시 서구 목향로207번길 50-20 (원창동) | 원창동 393-53, 393-54 건물번호 부여신청(신축)에 따라 기존건물 폐지 | 20131202 | 목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0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고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승인을 받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내용(총괄)

(단위 : 원)

| 구 분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 예산현액 | | 1,475,763,216,867 | 1,397,323,180,357 | 78,440,036,510 |
| 결산액 | 세 입 | 1,498,085,056,885 | 1,412,460,751,590 | 85,624,305,295 |
| | 세 출 | 1,178,371,360,463 | 1,153,889,205,773 | 24,482,154,690 |
| 결산상 잉여금 | 계 | 319,713,696,422 | 258,571,545,817 | 61,142,150,605 |
| | 명시이월 | 53,116,675,010 | 52,236,025,010 | 880,650,000 |
| | 사고이월 | 35,559,437,700 | 21,638,375,230 | 13,921,062,470 |
| | 계속비이월 | 134,318,219,490 | 106,453,668,720 | 27,864,550,770 |
| | 보조금실제반납금 | 28,898,613,440 | 28,263,299,590 | 635,313,850 |
| | 순세계잉여금 | 67,820,750,782 | 49,980,177,267 | 17,840,573,515 |

※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제표사항

1.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원)

| 과 목 | 일반회계 | 기 타 특별회계 | 기 금 | 내부거래 | 계 |
|--------|-------------------|-----------------|----------------|------------------|-------------------|
| 자산 총계 | 2,992,460,752,811 | 310,727,580,812 | 73,149,034,612 | (86,721,987,000) | 3,289,615,381,235 |
| 부채 총계 | 108,228,712,702 | 131,926,560,297 | 43,862,595,000 | (86,721,987,000) | 197,295,880,999 |
| 순자산 총계 | 2,884,232,040,109 | 178,801,020,515 | 29,286,439,612 | 0 | 3,092,319,500,236 |

2-1. 성질별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원)

| 과 목 | 일반회계 | 기 타 특별회계 | 기 금 | 내부거래 | 계 |
|--------|-------------------|-----------------|-----------------|-----------------|-------------------|
| 비용 총계 | 1,068,192,491,875 | 9,173,191,186 | 3,915,658,884 | (5,753,928,290) | 1,075,527,413,655 |
| 수익 총계 | 1,150,557,736,147 | 17,881,199,689 | 6,346,234,292 | (5,753,928,290) | 1,169,031,241,838 |
| 재정운영결과 | (82,365,244,272) | (8,708,008,503) | (2,430,575,408) | 0 | (93,503,828,183) |

2-2.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원)

| 구 분 | 2022년 | | | | |
|-----------------------------|-----------------|-----------------|------------------|-----------------|------------------|
|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내부거래 | 계 |
| I. 사업순원가 | 920,153,738,826 | 664,721,858,890 | 255,431,879,936 | 0 | 255,431,879,936 |
| II. 관리운영비 | 0 | 0 | 135,876,180,479 | (5,753,928,290) | 130,122,252,189 |
| III. 비배분비용 | 0 | 0 | 25,251,422,640 | 0 | 25,251,422,640 |
| IV. 비배분수익 | 0 | 0 | 43,400,500,433 | 0 | 43,400,500,433 |
|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 0 | 0 | 373,158,982,622 | (5,753,928,290) | 367,405,054,332 |
| VI. 일반수익 | 0 | 0 | 466,662,810,805 | (5,753,928,290) | 460,908,882,515 |
| VII. 재정운영결과 (V-VI) | 0 | 0 | (93,503,828,183) | 0 | (93,503,828,183)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202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규설치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설치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반영(안 제3조제1항)
- 신규설치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반영(안 별표1)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18-0502, 팩스 032-718-07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규설치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설치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반영(안 제3조제1항)

나. 신규설치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반영(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를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u>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u>라 한다.</p> <p>② (생략)</p> | <p>제3조(명칭 및 위치 등) ① ----- ----- ----- ----- ----- <u>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u>----.</p> <p>② (현행과 같음)</p> |

[별표 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 블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79 (석남동) | 석남1동 ~ 석남3동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84번길 60 (가좌동) | 가좌1동 ~ 가좌4동 |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14 (금곡동) | 검단동, 오류왕길동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82번길 9 (가좌4동) | 가좌4동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신현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5 (가정1동) | 가정1동 ~ 가정3동, 신현원창동 |

의견제출서

| | |
|---|---|
| 1. 자치법규명 |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 주 소 |
| 3. 의견 | |
| 4. 기타 | |
| <p>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 |
| 비고 |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